

# 건축물착공통계조사 시행규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칙은 통계법 제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조사중 건축물의 착공통계조사(이하“착공조사”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① “건축물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.
- ② “주택”이라 함은 독채로 된 살림집, 아파트 등완전히 계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한가구가 주거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축조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분으로서 1개 이상의 방과 부엌 및 출입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.
- ③ “착공”이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토공사(증축 또는 개축으로서 굴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축조하는 공사)에 착수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조사대상)** 착공조사는 대한민국의 영토내에서 착공되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군사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.

**제4조(조사의구분)** ① 착공조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.

1. 건축물 착공 통계조사.
  2. 주택 착공 통계조사.
  3. 보정조사
- ② 건축물 착공통계 조사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
- ③ 주택 착공 통계조사는 건축물중 주택 대상으로 한다.
- ④ 보정조사는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출된 건축물에 대하여 실시한다.

**제5조(조사기간)** ① 착공조사는 그달에 착공 신고된 건축물에 대하여 월단위로 실시한다.

**제6조(착공신고)** ①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공사를 착공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건축물 착공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할 수 있다.

1.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: 당해 건축허가 기관
2. 건축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: 당해신고서 접수기관
3.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건축물: 읍·면장

② 건축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신고서 2부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에 갈음한다.

**제7조(조사사항)** 착공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.

1. 건축물 착공통계 조사  
가. 건축주  
나. 건축 위치  
다. 지역·지구  
라. 건축물 용도  
마. 대지 면적·건축면적·연면적  
바. 층 수  
사. 건축물 구조  
아. 공사 종별  
자. 공사 기간  
차. 공사비 예정액  
카. 허가 유무
2. 주택 착공 통계 조사  
가. 주택의 종류  
나. 주택의 형태  
다. 규모

- 라. 주택의 호수
- 마. 주택의 이용 구분
- 바. 공사자금 조달방법

3. 보정 조사

- 가. 보정 조사 대상으로 추출된 건축물에 관한 제 1 호 및 제 2 호에 제기한 사항. 이 경우에 "공사비 예정액" 을 "공사실시액" 으로 한다
- 나. 기타 건설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.

**제 8 조 (조사방법)** ① 제 6 조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구청장(서울특별시 및 부산 시의 구청장을 제외한다) 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 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.

- ② 제 6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읍·면장은 그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접수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(서울 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은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착공신고서와 건축주가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확인한 후 별지 제 2 호 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.

**제 9 조 (신고서의제출)**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 ( 서울 특별시 및 부산시의 구청장을 말한다) 은 제 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총괄표를 다음달 10일까지 서울특별시시장·부산시장 1 부와 별지 제 3 호 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도지사 (이하 "도지사" 라 한다)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- ② 도지사는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송부한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총괄표와 시·도별 착공신고서 총괄표를 익월 15일까지 건설부 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보정조사)** ① 보정조사는 착공조사 결과의 보완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년 1회 건설부 장관이 임명한 조사원이 현지를 확인 조사한다.

- ② 건축주·건축물 소유주 또는 관리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 조사원의 질문에 정확히 응답하여야 한다.

- ③ 보정조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 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수 있다.

이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원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.

**제11조 (착공신고서 용지의 교부)**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접수기관의 장은 건축주 또는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착공신고서 용지를 무상으로 배부하여야 한다.

**제12조 (착공신고서 용지의 청구 및 배부)**

- ① 도지사는 익년도에 필요한 착공신고서 용지를 시·구·군별로 구분 산정 하여 매년 9월30일까지 건설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

- ② 건설부 장관은 청구받은 착공신고서 용지를 매년 10월 31일 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- ③ 도지사는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착공신고서 용지를 매년 11월30일 까지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접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13조 (신고서 및 결과표의 보존)** 건설부장관은 도지사가 제출한 착공신고서와 총괄표를 1년간 보존하고 착공통계표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197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